

# 나눔터



펴낸날 : 1992년 7월 1일 /펴낸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 소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 137-600) /전화 : (02) 525-5838 /기간 발행



지난 5월22일 서강대 청년광장에서 열린  
보은·진관 무죄석방 촉구대회의 가두행진  
모습.

## 차 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2

컬럼 … 5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박상희 목사 … 6

함께 생각해봅시다 : 미니스커트, 성충동 그리고 강간 … 7

연재기획 : 강간, 바로 암시다 ④ 근친성폭행 … 8

영화평 … 12

나눔터애긴글 … 13

이렇게 예방합시다 … 14

어떻게 할까요 … 15

알림판 … 15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16

# 지속적인 상담, 전체의 27.2%

## 성폭력특위 공개토론회 가져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현행 성폭력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현행 성폭력 관련법에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피해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손덕수(효성여대, 사회복지학)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살맛 안나는 세상”(본 상담소 제작)이란 비데오 관람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특위에 소속된 각 단체별로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의 문제, 어린이, 근친, 직장내, 장애인 성폭

행 등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생생히 드러내는 사례발표가 있었다.

본 상담소에서는 이미경 총무가 “근친강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피해의 특성을 발표하고 현행 성폭력관련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은 첫째, 우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둘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피해여성들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과, 근친강간 가해자의 범죄정도에 따른 보호관찰제, 심리치료, 가중처벌등의 필요성, 그리고 근친강간이 일어난 가족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개발등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는 학생, 주부, 여성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례발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개토론회의 장이 이뤄지지 못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문제제기에 비해 실제적인 대안의 모색 및 실천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지속적인 상담, 전체의 27.2%

작년 4월 13일 개소한 이래로 5월 말 현재 185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5월 30일 까지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강간이 683건으로 전체상담의 36.8%를 차지한다. 그리고 재상담 506건(27.2%), 기타 436건(23.5%), 성추행 162건(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여기에서 재상담이 27.2%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지속상담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어린이 피해자가 253건(29.9%)으로 어린이 피해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유아 피해가 3건(0.2%)이나 상담 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 성폭행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73.5%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근친이 34.8%, 이웃이 30.8%로 어린이 성폭행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71.7%를 넘고 있다 특히 주위에서 평범

## 상 담 유 형 분 류

<표1>

(1991. 4~1992. 5)

피해 유형	가해자	피해자				소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강간 683(36.8%)	아는 사람	근친	아버지·오빠	14	22	45	·	81(11.9%)
		친인척	16	11	19	·	46( 6.7%)	
		이웃	29	15	42	1	87(12.7%)	
		데이트상대	65	18	·	·	83(12.2%)	
		직장상사·동료	108	1	·	·	109(16%)	
		기타	23	7	15	·	45( 6.6%)	
		모르는 사람	71	48	46	1	166(24.3%)	
		미상	4	4	4	·	12( 1.8%)	
		미간	29	24	1	·	54( 7.9%)	

성추행 162( 8.7%)	아는 사람	근친	아버지·오빠	2	7	15	·	24(14.8%)
		친인척	6	3	9	·	18(11.1%)	
		이웃	7	7	36	·	50(30.0%)	
		데이트상대	3	4	4	·	11( 6.8%)	
		직장상사·동료	6	3	·	·	9( 5.6%)	
		기타	·	4	1	·	5( 3.1%)	
		모르는 사람	18	6	13	·	37(22.8%)	
		미상	·	·	3	·	3( 1.9%)	
		음란전화	5	·	·	·	5( 3.1%)	
혼인빙자 (60) 3.2%		60	·	·	·	·	60( 3.2%)	
남성피해 (10) 0.5%		4	2	4	·	10( 0.5%)		

기타 436(23.5%)	성문제·순결	46	3	6	1	56(12.8%)
	인신매매	3	·	·	·	3( 0.7%)
	아내구타	15	·	·	·	15( 3.4%)
	장난전화	29	14	1	·	44(10.1%)
	기타	285	26	7	·	318(72.7%)

재상담	506(27.2%)	327	35	144		
-----	------------	-----	----	-----	--	--

가해자상담	(1) 0.05%	·	·	1	·	1
-------	-----------	---	---	---	---	---

총	계	1175	264	416	3	1858
---	---	------	-----	-----	---	------

※ 어린이 만6세~만13세, 유아 만6세 미만.

하게 만날 수 있는 직장 동료나 상사, 데이트 상대, 이웃 등으로 강간범은 흔히 정신 이상자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상담에 대한 후속활동으로는 지속적인 전화상담 그리고 자문위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심리적 극복을 위한 면접상담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고소사건의 증가로 고소절차 상담, 담당 판, 검사에게 진정서 보내기, 공판에 참가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속상담의 결과 구체적으로 근친강간 피해자인 김진희, 은희의 아버니는 1심에서 10년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ㅂ읍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전화, 면접을 통한 상담뿐 아니라 특히 법정에서의 지원활동에서 정확한 상황파악과 후속처리를 위해 상담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상담지침” 완성

상담부에서는 상담원들의 신속하고 보다 좋은 상담을 위하여 “상담지침”을 완성하였다. “상담지침”은 의료 법률 상담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해당 분야의 상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담 받아온 상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일지”를 대폭 수정하였다. 새로운 상담일지는 신고율 기소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적처리’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한 눈에 볼수있게 한 페이지로 처리하였다.

또한 피해 여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 첫 모임을 1992년 7월 8일 가졌다. 구성원은 장영복, 정혜원, 고석주, 이명선, 변혜정으로 모두 5명이다. 집단상담은 9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 법적 지원 활동 활발

92년 현재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해온 것 중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12건이다. 이 중 고소 취하된 것이 한 건, 무고가 2건, 1심 완료된 건이 4건이다. 완료된 사건 중에는 하남시의 어린이 성추행이 3년을 선고받았고, 벽제의 어린이 강간은 징역 5년, 친부에 의한 자매 강

간건은 징역 10년이 선고 되었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7년을 선고 받고 6월 30일부터 항소심이 시작되었다.

### ㅂ읍 어린이성폭행 5년 선고

1991년 11월 28일, 경기도 ㅂ읍에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되었다. 가해자는 같은 동네 청년으로 밝혀져, 1991년 12월 28일 구속되었고, 4차례의 공판을 거쳐 5월 13일 5차 공판시 10년 구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6월 3일 선고 공판에서 5년이 선고되었다.

### 윤간 증양 사건

작년 겨울 학교남자친구 9명에게 윤간을 당한 증양(중3)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 재판은 북부지청에서 3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 진행 되었다. 6월 12일 오후 2시 공판에서 주범에게는 장기 7년 그외 8명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이 구형되었다. 7월 11일 12시 북부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 김진희, 김은희 사건

친딸 2명(26세, 24세)을 10년이 넘도록 강간해온 아버지(김창성)가 지난 5월 21일 특수 강간죄등이 적용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 내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그 뻔뻔스러움을 보여줬던 피고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두딸도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에게 당한 아蛮적인 폭행과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우리를 괴롭힐것을 생각하면 징역 10년이란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이 사건은 작년 12월 31일 전국실종 기출인 찾기운동본부를 통해 본 상담소에 의뢰되었으며, 두딸과 지속적으로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이 이루어졌다.

### 직장내 성폭행 피해자 무고죄로 구속

91년 12월 12일 본 상담소에 직장내 성폭행으로 상담해온 내담자 O씨(24세)가 용기를 내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부인과 진단서와 정형외과 진단서를 증거로 고소했으나 92년 2월 강간이 아니화간으로 몰려 2월 25일 무고죄로 구속되었다. 수사 진행으로만 알고 법원에 출두했던 내담자는 영문도 모른채 구속이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본 상담소에 연락을 취해왔다. 4월 15일 1차 재판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었고 7월 1일에는 구형공판이 있었다. 공소를 유지 하려는 검사와 무고죄를 증명하려는 변호사의 열띤 공방은 법정을 들끓게 했다. 상담소와 주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무고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월 22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황 변호사 법적 자문

상담부(부장:이명선)에서는 상담활동을 평가하고 상담원 지속교육을 겸한 상담사례연구모임을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가졌다. 4회 모임에서는 이종걸 변호사의 무고죄 특강이 있었고, 5회 모임에서는 조영황 변호사를 모시고, 그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법률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6회 모임에서는 혼례준 상담원의 성폭행후유증에 대한 사례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상담원 지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상담부에서는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을 윤관현(목동청소년상담실)선생님의 진행으로 3주에 걸쳐 실시했다. 이훈련에는 상근자 2명, 상담원 6명이 참여했다.

### “성폭력위기센터” 발기인대회 성황리에 마쳐

본상담소가 주관하고 여성신문사가 후원하는 “성폭력위기센터” 발기인대회가 6월24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계, 학계, 의료계, 여성계, 법조계 인사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문국진(한국법의학회회장) 조영환(변호사) 이계경(여성신문사장) 최영애(본상담소대표)씨등 4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내년 7월 위기센터 본격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후보, 정주영 국민당 대통령후보, 박찬종 신정당 대통령후보등 3명의 후보, 안병무(한신대 명예교수), 박양실(여의사협회회장), 이태영(가정법률 상담소 소장), 박영숙(민주당대표 최고위원), 김영정(대한적십자사부총재)등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성폭력위기센터는 60여명의 각계인사가 뜻을 모아 현재 600여명의 발기인이 구성되었으며, 3억원의 기금마련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금에 참여하실 분은 본 상담소(525-5838)로 연락바란다.

### 첫돌잔치 및 이전기념 집들이

4월30일(목) 오후 6:30 부터 본상담소 개소 첫돌을 기념하고, 집들이를 겸한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사, 자문위원, 발기인,

상담원, 자원봉사자들 50여명과 여성신문. 여연, 여성의전화 실무자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제2기 상담원 교육 마쳐

1992년 3월17일부터 7월14일까지 16주간 실시되었던 상담원교육(여성학교육 / 상담교육)을 마치고, 상담실습에 들어갔다. 이번에 배출된 16명의 상담원들은 2개월간의 상담실습을 끝낸후 본격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게된다. 제 3기 상담원교육은 내년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되다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되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특위에서 준비해온 성폭력특별법 시안이 완성되어 7월 3일 발표했다. 그리고 7월 13일 오후 2시 태화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행 성폭력관련법이 피해 여성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함을 문제제기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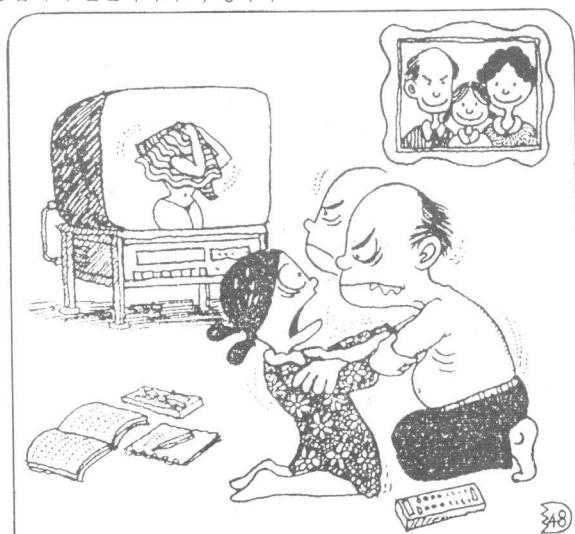
- 1) 성폭력 대책에 관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조항
- 2)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설치
- 3) 기존의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자기결정 침해의 죄”로 성폭력의 새로운 법적개념 규정
- 4) 성폭력의 연속선상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법령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고,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행위별, 대상별, 주체에 따라 세분(부부강간, 성혐오행위, 인신매매, 강요된 매매춘까지 포함됨)

- 5)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의 폭을 넓힘
- 6) 고소기간, 친고죄 폐지, 일부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 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 가해자 교화시설 설치
- 8) 성폭력범죄의 관할을 가정법원 산하에 두고 조사관 제도를 도입 또는 활용
- 9) 수사, 재판 과정과 병원 치료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제도 도입 등이다.

이제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필연성은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각 정당에서도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14대 총선시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민자당과 민주당에서는 각기 성폭력특별법 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나와있는 여연 성폭력 특위, 민자당, 민주당의 3가지 시안은 각기 조금씩 다른양상을 보인다. 특히 민자당과 민주당 시안에는 기존의 ‘정조에 관한 죄’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수정, 보완되어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요구가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진정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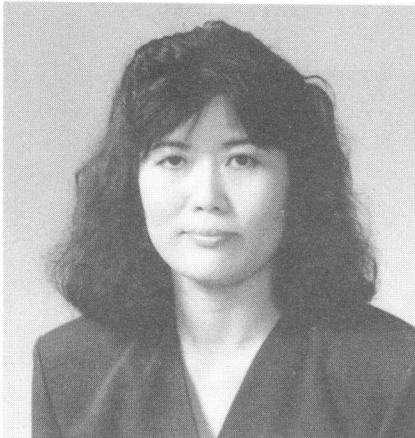


# 성폭력은 전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추애주/본 상담소 이사장

최근의 “한국 성범죄 발생률 세계 제3위”라는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깊은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녀간의 성문제를 걱정하여 엄격한 남녀 분리문화를 형성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경악할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로의 전환은 다양한 가치와 시각이 부정적, 궁정적으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은 정보전달, 대중예술이라는 미명아래 지속적으로 인간의 성을 포르노그래피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식의 성적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며 직장, 가정, 학교, 사회에서 친구, 애인, 직장상사, 동료, 이웃 등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의사소통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인 오해나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기질에 근거한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발적인 사건도



있지만, 우발적이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성을 도구화, 수단화 하는 의미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희생자에 대한 기존의 대우나 비난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주어서 전 인생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회적, 국가적 폭력이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떤 장소에 갈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의사를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성폭력은 순결, 정절 이념과는 무관한 범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은 경시하고 여성은 장난, 쾌락의 대상, 수단과 도구의 대상으로 보는 비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토를 바꾸어 나가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성폭행 세계 3위라는 사실에는 모든 여성의 잠정적인 희생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성은 무관심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가치, 자기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팽개치는 일이 될 것이다. 성폭력은 전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이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미경/본 상담소 총무

우리는 올해 1월, 9살때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을 처음 접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3년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 긴 세월을 보은이는 고통속에서 침묵해 왔고, 우리 사회는 보은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 죽은 김영오의 포악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함께 분노하고 있다. 전국 56개 여성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모인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에는 이들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8만여명의 서명과 수백장의 탄원서가 모여졌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이들이 가치판단 능력과 지식을 갖춘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피할 수 없었나?’, ‘살인까지 할 수 밖에 없었나?’에 강한 의문을 갖는다. 특히 지난 7월 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보은, 진관에게 수사기관이나 여성단체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점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 치욕적인 근친성폭행을 당하고도 아버지로부터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가장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 마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할 수 없다. 너 하나님 참고 희생하면 집안이 편안하다”는 태도를 보였을 때 김보은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더욱이 아버지는 검찰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권력남용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순결 이데올로기는 보은이의 입을 스스로 막게 만들었다. 보은이의 고통을 함께 나눈 유일한 사람인 김진관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보은이와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왜 미리 부모와 의논해 도움을 얻지 못했나?”를 헐책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이 상황의 아들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들의 입을 꼭꼭 막아 두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었기에 더 침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속에서 너무나 숨이 막혀서 이들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털출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나? 현재 우리 상담소에 접수된 170여건의 다른 근친강간 사례들도 어쩌면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내담자들의 대부분이 어릴때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가족이 알고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한결같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머리로 판단하여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근친강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았는가?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런 희생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보은, 진관을 단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 ■

# 너무 평범해서…

글 · 백은주 / 본 상담소 상담원



92년 4월 4일 충주지방법원에서 김보은, 김진관 재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보은, 김진관은 각각 징역 4년, 7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에 방청객들은 흥분하여 술렁 거렸다.

이때 앞에 앉아 있던 몸집이 작고 곱상하게 생긴 아낙네가 일어나 뒷좌석을 돌아다보며 손짓을 했다. 그 순간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방청객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은 판사에게로 향했다. 갑자기 몰려 온 전경들이 저지했지만 몸싸움에 노련한 그 여인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접견실까지 들어간 여인은 판사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화두처럼 내뱉는다. 자연인인 아버지로서의 심정까지도 물으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며 강력히 항의 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는 김부남 대책위가 세워지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바로 박상희목사다. 처음에 박목사가 소개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여목사가 드문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발상이리라.

그러나, 그는 목사인 남편과의 사이에 고3인 아들, 중2인 딸까지 있는 48세의 아줌마다.

박목사는 박애주의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중 맏이로 태어났다.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개방적이며 혁신적이었고 평등을 강조해서 일하는 언니가 식탁에 앉아야만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등사상과 기독교적 사랑을 몸에 익힌 박목사는 대학입학과 더불어 실제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한신대(기독교교육 전공) 재학 당시, 선교활동 프로그램인 빈민지역 선교를 통해 구체적 대상을 설정하게 되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그의 운동은 KSCF(기독학생운동)와 노동운동으로 이어져 투옥당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박목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인과 며느리로서의 삶이 반쪽임을 깨닫게 되었고, 여성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전주

지방에 많은 여성 단체들을 만들게 했는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 민주여성회, 전북여성의 전화, 평화여성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가 여성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 하나는, 딸을 어렸을 때 인신매매범에게 잃었다가 찾았던 경험이고 또 하나는 청량리역에서 포주가 죽어 오니 숨겨 달라고 애원하는 아가씨와의 만남이다. 18살에 무작정 상경해 식모살이하다가 사창가에 팔려 3년 동안 매춘행위를 하다 너무 고생스러워 도망친 그녀의 사정이 딱해 우선 집으로 데려갔다. 가 있을 곳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결국 기독교 쪽에서 운영하는 ‘부녀보호소’에 보냈는데 가기 싫어하는 그 슬픈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박목사는 이런 경험들로 인해 김부남사건이 터지자 선뜻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대책위를 꾸리는 데서부터 종결까지 무죄석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감호처분으로 끝나고 말았다.

박목사는 김부남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못내 가슴이 아프다. 특히, 치료비 3천만원을 마련할수 없어 감호소에 갇혀 치료를 받는 것이 안타깝다. 어쨌든 박목사는 김부남사건을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사실상 김부남 사건 대책위 활동은 종결되었고, 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박목사는 이 후원회를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 대책위로 전환할 꿈을 키우고 있다.

요즘 박목사는 미국 유학중인 남편을 만나러 가는 계획도 미뤄 놓은 채 「김보은, 김진관 사건」을 위해 이들의 무죄석방을 위해 전주에서 충주로, 또 서울로 분주하다.

“내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박목사. 이러한 삶의 태도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 7월부터 시작될 「보은, 진관」 항소심에서 그녀의 큰 활약을 기대해 본다. ■

# 미니스커트, 성충동 그리고 강간

이명선/역대 여성학강사

강간과 성충동, 미니스커트와 꼬리치는 여자, 본능을 억제못하는 남성. 이러한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오해’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 남자는 다 늑대다.

남성의 성을 특징적으로 대변하는 믿음이 바로 ‘성충동은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이다.’라는 것이다. 흔히 사춘기를 지나 남자와의 교제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의 부모나 오빠로부터 듣게되는 ‘남자는 다 늑대다’라는 애정 어린 충고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남자들은 흔히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보면 성충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것이 인간 고유의 본능이라면 남자들은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수염이 긴 양반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를 보고 성충동을 느낄수 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벌거벗고 살다시피하는 아프리카의 원시 사회에 어떤 여자 인류학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들어갔을 경우 그 부족민들이 참을 수 없는 성충동을 느끼게 될까?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여성은 기이하고 해괴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남성 중에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느끼기보다 ‘꼴사납다’고 비판하는 남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성적으로 유혹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미니스커트’라는 패션이 일반화 되어 있고 또 다리를 노출한 여성의 모습이 섹시하다고 평가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경험일뿐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미니스커트는 유혹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어떤 남성의 경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보고 성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성충동을 느

낀 모든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만이 강간 당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옷을 수수하게 입고 새벽에 도서관에 가던 여학생이 치한에게, 맞선 본 남성과 데이트 중이던 여성이 상대남성에게, 9살 어린소녀가 의붓아버지에게, 집에 돌아가던 여성이 의경에게, 회식에 따라간 여직원이 상사에게 강간 당하는 현상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 강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보다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간이 단지 여성의 도발적인 모습때문에 일어나기 보다는 무언가 다른 동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바로 ‘남자는 여자를 강간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여자가 유혹적인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허락되면’, ‘술에 취한 상태이면’, ‘단둘이 있게 되면’, ‘성충동을 느끼면’ 강간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바로 주요 범인이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한 남녀관계나 잘못된 성의 사회화, 향락문화의 만연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일 것이다.

## 여자는 여우인가.

### 왜 미니스커트를 입을까?

과연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는 것은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싶어하는 의사 표현인가? 여자는 먼저 ‘꼬리쳐놓고’ 막상 강간당하면 울고불고하는 교활한 여우인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짙트는 청소년 시절부터 남성은 다양한 성적 경험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포르노물이나 잡지, 동료들의 노골적인 이야기 등을 통해서. 또 도처에 널려있는 향락업소를 보면서 ‘남자는 성적인 존재’, 그래서 매춘(賣春)을 할수도 있고 심지어 강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다. 반면에 여자들은 늘 ‘몸조심해라’ ‘일찍 집에 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은 성적인 경험에 접하게 되는 것이 여성으로서 치명적임을 알게된다. 대신 어려서부터 색색의 머리핀과 리본을 머리에 달고 레이스 달린 치마를 입으면서 ‘여자아이는 예뻐야 한다’, ‘귀엽게 보야야 한다’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늘 살이 찰까봐 전전긍긍하고 새로 유행하는 패션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새로운 화장법에 귀를 곤두세울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은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다. 디자이너가, 의류상인들이 유행을 만들어내고 신문이나 T.V에서, 잡지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은 자꾸만 ‘클로즈 업’한다.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한다. 여러종류의 옷 중에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자유란 일종의 즐거움이다. 남자가 아침마다 네티이를 고르듯이. 다만 남자의 옷중에는 미니스커트라는 형태의 옷이 없고 여자에게만 혜용되어 있는 데서 생기는 차이 일 뿐이다.

남자는 늑대여서는 안된다. 여자도 여우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늑대처럼, 여우처럼 보여지는 것은 잘못된 사회이다.

남자와 여자가 늑대처럼, 여우처럼 보여지는 것을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잘못된 상식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본능을 지닌 채 남성은 본능을 탐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성과 감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

# 근친성폭행, 그 오해와 진실

안연선/ 본 상담소 조사연구부장

본 상담소의 1991년 통계를 보면 전체 1천2백건의  
상담건수 중 9백2건이 성폭행에 관한 상담이고,  
그중 근친강간이 89건, 근친성추행이 33건으로  
1백22건이 근친에 의한 성폭행 상담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이상 쉬쉬하며 은폐해서는 안된다.

## 근친성폭행(incest)이란?

근친성폭행이란 가족 혹은 친인척관계(예를들면 친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부, 할아버지, 친오빠, 사촌오빠, 고모부 등)에 의해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사회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가족구성원간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근친성폭행의 특성은 그 행동을 비밀로 한다는 점이다. 자녀가 귀여워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는 그 행동을 비밀로 숨길 필요가 없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 행동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녀에게 자기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면 이 행동은 비밀리에 하려 할 것이고 이는 근친성폭행이 된다. 근친성폭행에는 성기 삽입과 접촉 뿐 아니라 입, 가슴, 항문 등의 접촉도 포함된다. 또한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벗긴 후 사진을 찍는 일,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 등도 포함된다.

## 근친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생각

\* 잘못된 생각 1: 근친성폭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드문 일이다.

본 상담소의 1991년 통계를 보면 전체 1천2백건의 상담건수 중 9백2건이 성폭행에 관한 상담이고, 그중 근친강간이 89건, 근친

성추행이 33건으로 1백22건이 근친에 의한 성폭행 상담이다. 이제 이 문제는 더이상 쉬쉬하며 은폐해서는 안된다.

요즘 신문에서도 근친강간이 종종 보도된다. 이번 김보은, 김진관 사건 뿐 아니라 친아버지에 의해 국민학교 6학년, 4학년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두 자매 사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사건, 10대 고아를 공부시켜 준다면 양녀로 삼아 주말마다 별장으로 데리고 가 3년동안 성폭행한 사건 등이다. 미국의 경우, 한 보고서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10%가 가족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 잘못된 생각 2: 근친성폭행은 가난한 가정, 혹은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 그리고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근친성폭행은 어느 계층에서건 일어날 수 있다. 고위검찰이었던 김영오나 태백의 광부를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도, 고학력 가정에서도, 도시에서도 지방에서도 일어난다.

\* 잘못된 생각 3: 근친성폭행의 가해자는 사회적, 성적 도착자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신양을 가지는 등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직자, 선생님, 기업체 간부, 노동자, 의사, 알콜중독자, 심지어 성직자 등도 있다.

\* 잘못된 생각 4: 근친 성폭행을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 불만 때문이다.

근친성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원만한 성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자녀를 상대로 하는 이유는 자기 힘과 통제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무조건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이다.

가해자에게 채워지지 않는 성적인 욕구와 충동이 있다하더라도 성적인 불만이 행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잘못된 생각 5: 아이들 특히 10대 소녀들은 유혹적이어서 성폭행을 유발하므로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순진하고 솔직하게 자기 성적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려 한다. 어린 딸, 조카, 동생이 아버지, 삼촌, 오빠 등에게 애교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는 가정과 사회에서 애교스럽게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설사 딸, 조카, 동생이 애교로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근친성폭행의 책임이 있다.

# 근친성폭행에 대한 대책

## 1. 피해 여성들을 위한 사회보장차원의 시설이 필요하다.

근친강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가해자와 격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집을 나와서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피해를 치료하고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보호책이 필요하다.

## 2. 근친강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나 살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직계비속에 대한 직계존속의 위법행위, 특히 인륜에 반한 근친강간의 가해자는 중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두 자매를 친아버지가 10년이 넘게 성폭행한 가해자가 최근에 1심에서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현재 항소를 했다.)

## 3. 근친강간 피해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 같은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치료적이고 긍정적인 방면으로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근친강간 가해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치료팀이나 기구가 설치되어 일정 기간 격리, 교정, 치유하여 건강한 가족구성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근친강간이 일어나는 가정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 근친성폭행을 예방하려면

1.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신체구조와 각 부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올바른 성에 대해 서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을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보다는 아이에게 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누군가가 아이들 몸의 성적인 부분(성기, 가슴, 입술 등)을 접촉해서 불쾌함을 느끼게 한다면 “싫어요”, “안돼요”라고 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3. 아이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때로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아이가 어떤 친척을 특별히 불편해 한다면 왜 그런지 아이와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4. 아이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직접 털어놓고 말하기를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아이가 만약 누군가의 접촉에 의해 불쾌감과 혼란을 느낀다면 부모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6. 부부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근친강간은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남매간의 근친강간

전연희/본 상담소 조사연구부장

**남매 간의 근친강간은 보통 과자나 돈 등의 미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부모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며,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근친강간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폭행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오빠와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행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고 있다. 남매간의 근친강간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계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차원에서 공공연히 허용되기도 했다. 몇몇 연구물을 보면, 남매간의 근친강간이 부모와 자녀간의 것보다 덜 억압적이어서 자칫 간과될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성적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인성 문제, 억압적인 상황 그리고 역할수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긴장과 분노, 억압, 외로움, 고립감 등을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또한 보다 약한 자를 통제하고 보복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남매간의 성에 대한 태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의 판단은 문화적, 인종적 배경, 지리적 위치, 개인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러나 상담자는 남매간의 근친강간의 영향에 대해 장단기간을 걸쳐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병적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어릴 때 근친강간 피해자는 성장한 후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맺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매간의 근친강간은 다양한 성적 착취형태로 발전되며 부모가 알기 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매간의 근친강간은 완전한 동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남매간의 근친강간은 보통 과자나 돈 등의 미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부모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하며,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더 심하게 성폭력을 가한

다.

남매간의 근친강간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유아나 어린아이를 “병원놀이” 등을 통해 성적으로 이용한다. 또 한편 가해자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통제하며 교묘하게 성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위협, 두려움, 압력 심지어 친밀감까지 사용하여 바라는 것을 얻는다.

그러나 남매간의 근친강간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가학적인(sadism) 것으로 가해자는 폭력과 힘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룬다. 이런 종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오랫동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

**사례 :** 제니는 21살의 대학생으로 대단히 소극적이고 기숙사 방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4살때부터 13살난 오빠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후 그녀는 위협과 구타로 마스타베이션, 질과 항문에 병이나 이물질을 넣는 등 점점 더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

**남매간의 연령차 :**

남매간 근친강간의 경우 연령차이가 사건의 심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연령차가 많이 나는 경우 가해자는 보다 어린 피해자를 통제하고 성적 착취를 하기가 쉽다.

**사건 폭로 :**

남매간 근친강간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대개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한다. 특히 부모들은 이 사건이 이웃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인 딸에게 입을 다물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또 다시 성폭행을 하며, 피해자는 도움

을 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방법을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 이런 행위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무관심 :**

남매간의 근친강간이 드러나면, 피해자가 받을 피해들, 갈등, 혼란, 죄의식 등의 문제들엔 무관심 할 수 있다. 어른들은 특히 남매간의 근친강간을 지나간 일로 여겨 앞으로의 나타날 나쁜 영향은 무시한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근친강간을 치료하는데 가장 큰 문제이다.

**가족에 관심 :**

가족과 어린이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1차적으로 피해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건폭로에 대한 반응 :**

가족이나 부모들이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 피해자의 감정과 느낌을 말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불쌍히 여기거나 가해자나 가족, 사건에 대해 반감이나 혐오감, 판단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첫 면담 :**

남매간의 근친강간이 발생한 가족을 접할 때 첫 면담이 가장 중요하다. 이 면담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지를 좌우 한다.

**접근 :**

목표를 분명히 하고 확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위협은 금물이다. 가족구성원들은 따로따로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엿들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적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과 사적 권리는 보장된다고 확신을 주어야 한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는 가족들을  
따로따로 만나는 것이 좋다.  
사적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사례 : 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에 사회봉사원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남매 간 근친강간 사건을 접하고 그 부모를 만나려 했지만, 처음엔 완강히 거절당했다. 여러번 전화로 접촉한 후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오랜 상의를 한후 자녀들을 만났다. 먼저 피해아동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두 오빠들이 뒤에 와서 엿듣는 등 계속 방해 공작을 했다. 그래서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패티(Pattie)는 그녀의 두 오빠로부터 강간당한 것을 말했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 알려 엄마가 도와주기를 바랬다. 물론 아버지한테도

그 사실을 알렸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토론을 했다. 그후 다섯번 더 방문한 후 이 사건은 끝이 났다. 일단 치료가 시작되자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돋겠다는 나의 진지한 바램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판단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며, 또 가능한한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부모의 권한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다. 물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했다. 그러나 나는 치료를 위해 자녀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도록 충고했다.

**상담시 고려 사항들 :**

1. 상담자는 부모와 아이들 모두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간혹 저항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은 그 가족들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열쇠가 되었다.
2. 상담자는 내담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내담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시간을 더 연장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3. 많은 상담자들이 어린이들의 성경험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담자 가족과 성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모가 남매간의 근친강간의 나쁜 영향을 부인하지 말고 올바로 직면하도록 주어야 한다.
4. 부모나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에서 간혹 어린이의 행복을 간과할 수 있

다. 먼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5. 상담의 초기 단계에는 가족들을 따로따로 만나는 것이 좋다. 사적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처벌이나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6. 상담자는 가족들에게 가정과 사회, 환경의 역할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가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안전과 보호,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또래들의 영향과 압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문화, 윤리, 종교가 가족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

이것은 Suzanne Sgroi의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중에서 6장 "Sibling Incest," Carlos M. Laredo를 번역한 것이다.

**내가 상담소에 오는 이유는 ?**

칭찬을 듣는 것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신나는 일이다. 상담소에 오면 일거리가 많다. 그러나 아직은 잔심부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푸짐한 칭찬, 나의 멋직은 웃음뿐.

대학 4년 내내 존티를 벗느라 애썼지만, 아직도 내게 서울은 넓고 모르는 일은 많다. 도시티를 익히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문방구와 은행, 우체국을 열심히 관찰하고 배운다. 그저 하루라도 빨리 "존티야 사라져라" 생각하면서, 걸어도 될 길을 뛰어다닌다. 일을 끝내고 돌아와 상담소 문을 열면, 행동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한 자(??)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칭찬으로 변해 쏟아진다. 그런데 더욱 신나는 것은 맛있는 먹을 것들이 동등한 비율 이상으로 내게 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좋은 말'과 '먹을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일 것이라 추측하시는 마시라. 나를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은 상담소에 옴으로써 마음이 꽉차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느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 속에서도 서로를 염려하고 배려해주는 자매애. 고통스런 상담 내용 속에서도 늘 미소와 웃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느끼는 인간애. 바로 이런 것들이 날 이곳에 오게 한다.

**상담소는 내가 지켜야지 !**

오후에 나왔는데도 잠이 덜깬 것 같아 몽롱~.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점심식사를 끝낸 상근 선생님들의 증세가 수상하다. '졸립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피곤성 집단 이상증세'인듯. 정신이 번쩍 든다. 짧은(?) 나라도 상담소를 지켜야지.

**장난전화 컴플렉스**

정신없이 바쁘다. 계속되는 상담. 거기다 첫번째 받은 장난전화로 인해 더욱 마음이 산란하다. 너무나 진지하게 상담을 해서 미쳐 장난전화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장난전화도 점차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다시 전화를 해오지 않았다면 완전범죄였을 것이다.

"조심하세요!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를."

# 영화속에서 성폭력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변재란/영화평론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발생률 세계 3위라는 충격적인 보고와 함께 거의 매일이다 시피 신문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성폭력에 대한 기사는 여성들의 사고와 생활반경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만일'이라는 생각 속에서만 맴돌다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운나쁜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거나 하고 애써 무시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저편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음을 감출 수 없다.

최근에 국내에 수입된 몇 편의 영화들은 바로 이런 안정을 희구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에 호소하는 영화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따분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사람들에게 위기에 빠진 주인공들에게 집중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일으키게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포감은 배가된다. 마틴 스콜세즈와 로버트 드 니로 짹이 만든 「케이프피어」, 「베드룸 아이즈」로 유명한 커티스핸슨의 「요람을 훈드는 손」, 필 조아누의 「최종분석」등은 바로 이러한 관객의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영화라 하겠다.

「케이프 피어」는 가슴에 깨어진 하트 모양에 '로레타'라는 문신을 새긴 맥스(로버트 드 니로)가 복수극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로레타 컴플렉스'는 나이 어린 소녀를 좋아하는 이상심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는 일찍이 소녀 강간 폭행죄로 14년간을 감옥에서 보내후 자신의 국선 변호사였던 샘을 찾아 간다. 샘은 재판 당시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결정적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샘의 어린 딸을 포함한 그의 가족에게 복수의 손길을 뻔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화는 자칫 한 정신이 상자의 집념과 그 덖에 걸린 정상인들의 쫓고 쫓기는 이야기로 몰고가는 듯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는

그러한 정신이 상자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일어난다.

「요람을 훈드는 손」은 바로 이러한 일반인들의 혀점을 찌르는 영화이다. 산부인과에 진찰받으려 간 임신한 여자에게 성적 추행을 서슴지 않는 의사, 그리고 이것을 고발했더니 의사가 자살해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줄지어 과부가 되어버린 그 의사 부인이 설상가상으로 파산과 유산(그녀 또한 임신중이었다)을 겪은 후 한을 품고 자신을 파멸시켰다고 믿는 문제의 부인의 가정에 보모로 들어가 집안을 조금씩 파괴시켜간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예를 들면 음란전화나 성적인 농담, 강제 애무에 이르기까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고발을 한 주인공이 그러한 불운에 처하게 된다는 설정은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려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기에 충분하다. 마치 고발을 하지 않았으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아이를 보모에게 맡긴 주부에게 경고하여 사회활동하는 여성들을 왜곡하는 지극히 반여성적인 영화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여성성은 「최종분석」에서도 발견된다. 이 영화는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녀와 정신과의사, 동생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할 열쇠를 쥐고 있는 듯한 언니를 등장시켜 근친강간, 배반, 살인, 음모 등의 복잡하게 얹힌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언니든 동생이든 누가 양아버지와 근친강간 관계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면 (물론 영화에서는 분명치 않은데) 이 사건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켰는가를 보는 정도일까.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감독 주연을 한 「사랑과 추억」은 바로 어릴 때의 성폭행의 체험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 어느 비 오는 날 감옥의 탈옥수들에게 엄마와

쌍둥이 남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엄마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감춤으로써 억압된 상흔으로 인해 여동생은 거듭된 자살기도로, 남주인공은 남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双重 나날들을 보낸다. 영화는 이 남주인공이 여동생 담당 정신과 여의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과거를 솔직하게 토해냄으로써 여동생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극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 영화들 모두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것까지 접근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몇년 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디포스터가 주연한 「피고인」은 보기 드문 영화라 할 수 있다. 마치 운동경기를 보듯 환호하고 응원하는 '관중'들 앞에서(결코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없이) 세 남자들의 '사내다움'의 실험대상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옷차림, 음주여부, 증인, 과거 등을 문제 삼는 재판과정이 결코 낯선 장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영화는 바로 가해자 남성보다 피해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사회적으로 뿌리깊은 편견에 도전하면서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조의 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는 우리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최근에는 '김부남 씨 사건'의 영화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러나 영화가 현실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은 영화적 장치나 효과음이 없이도 훨씬 더 치열하고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를 재판의 과정에서 또 한번 아프게 하는 경우들처럼 영화속에서 이 문제는 축소되거나 왜곡되며 소재주의에 빠지는 한계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 공허한 관심

여난영/방송작가

장소: 10대 윤락행위 보도로 다시 주가 오른 미아리 어느 주점

때: 밤이 이슥한 즈음

등장인물: 40대 중반에서 50대까지의 세 남자, 10대소녀 셋.

A: 참 거 정력도 좋은 놈일세! 뭘 먹었길래, 그 나이에 매일 그 짓을 했다니.

B: 아이고, 이 사람아. 생각만 해도 징그럽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째 그런 짓을 할 수 있대냐? 안 그러냐?

D: 아이참,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B: 아무리 제 핏줄 타고난 자식이 아니기로, 세상 참 험해 졌어.

D: 아이, 이러시면 안돼요. 다들 보잖아요.

C: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놈이 그러고 싶었어도 솔직히 막말로 안 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그래요?

A: 모르지. 사실 나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은근히 좋지 않았으면 어째 그 나이 먹도록 그리고 살았겠어? 제아무리 독한 놈한테 걸렸어도 그렇지 죽기 살기로 도망하면 이 넓은 땅덩이에서 어째 찾을 수 있겠어?

B: 그리고 보니 그려네요. 죽은 놈만 불쌍하지.

C: 여자들 왜 거칠게 대하는 남자를 겉으로야 싫다 해도 속으로는 좋아 하잖아요.

B: 우리 그런 밥 맛 없는. 아니지, 술 맛 떨어지는 얘기 그만하자구. 아이구 요 귀여운 것들, 뭐하는 거야, 술이나 따르지 않구서.

D: 사장님, 아이 싫어요.

B: 구여운 것!

장소: 동네 미장원 때: 오후

등장인물: 30대 미용사 1명, 동네 아줌마 2명.

A: 글쎄, 음란 비디오를 틀어놓구선, 그 짓을 똑같이 했다는 거야.

B: 어머, 어머!!

A: 몰랐어? 그 뿐이 아니래, 글쎄 애 엄마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야.

C: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대요?

A: 뿐이 아니야. 거의 매일 그랬대. 이복형제들 보는데서도 그랬대잖아.

B: 어머나!

A: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교사까지 그 짓을 당했대요. 담배 불로 몸을 지져가면서 도망도 못가게 붙들어 가둬놓고 그랬다는 거야.

C: 어머, 언니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래요?

B: 세상에 나는 통 몰랐네.

그런데, T V에서도 별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

A: 위낙 더러운 얘기라 그럴거야.

C: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A: 아마 지금 감옥에 있을걸.

C: 사실 그래도 살인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법대로 하믄 돼지, 그런다고 다 죽일 수야 없지.

장소: 대학가 어느 찻집 때: 토요일 저녁

등장인물: 두 연인 (A 남자 와 B 여자)

B: 자기 그 사건 들었어?

A: 몰라. 사회면에 나는 살인 사건이 어디 한 둘 이냐?

B: 이번 사건은 그런게 아니라니까.

A: 그래?

B: 뭐가 그래야? 어쩌면 말이 그렇게 밖에 안나와?

A: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B: 화도 안나? 그 엄마나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이나 본인이 겪어왔을 지옥같은 나날들이 그냥 불쌍하니? 이러니 남자들이란 죄다 쓸어버려야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거 아냐? 판사도 남자, 검사도 남자니 재판 결과가 그 따위로 나오지.

A: 너 왜 그렇게 비약 하니? 누가 뭐랬다고 혼자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야? 자기맘에 안든다고 상대를 죽여도 용납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니?

B: 어떻게 그게 맘에 안든다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야? 정당방위라구. 멀쩡한 정신을 유지한채로 인간답게 살기위한 어쩔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A: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어려서야 그렇다치고, 스무살이나 됐으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B: 그런데 그게 자기가 생각 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이지가 않다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상을 해봐. 또 그렇게 고소한다고 치자구 당장 그래 놓고 그 아버지한테서 어떤 위해를 당할지, 어머니는 어떤 입장에 놓일지 얼마나 불안하겠어?

A: 네가 잘 몰라서, 아니 그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그런 일이 그렇게 허술하게 취급되겠어? 뭐 법이나, 전담부서들이 분명히 있을거야. 그리고, 그런 미친놈 하나를 보고 남자를 다 싸잡아 욕하시는 마라.

B: 하기야 그 여자애 옆에는 착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까. 법에도 눈물은 있다더니, 눈물이 없어도 그렇지. 실형을 선고 하다니.

A: 야,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자. 생각할 수록 기분 나쁜 얘기를 왜 자꾸 꺼내니? 기분 바꿔서 영화나 보리가자!

이미 알려진 얘기외에도 어느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깍이고 쓸리다 묻혀버린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굳이 사지 선다형의 보기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자, 한 가족의 얘기 이면서 또 조금씩은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예방합시다

# 성폭행에 대한 자기 방어법

 <p>문과 창문을 “열쇠”로 잠그라. 만약 당신이 열쇠를 잃어 버리면, 새자물쇠를 설치하라.</p>	 <p>소방대피구나 1층에 있는 창에는 문이나 창살을 설치하라.</p>	 <p>모든 창문에 블라인더나 커튼을 달아라.</p>
 <p>집에 도착하기 전에 열쇠를 준비하라.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면, 우회하라. 그러면 그가 당신이 사는곳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예: 남편이 자고 있다고 말하라)</p>	 <p>위기시 믿을 수 있는 이웃을 알아두어라. 경찰서나 이웃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놓거나 전화기 옆에 경찰서, 이웃의 전화번호를 잘 보이도록 적어두라.</p>	 <p>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해 틈구멍(peep hole)을 이용하라. 봉사원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라. 의심이 나면, 어떤 사람도 들여놓지 마라.</p>
 <p>실수로 누군가를 안으로 들여 놓으면, 당신이 혼자가 아닌체 하라. (예: 남편이 자고 있다고 말하라)</p>	 <p>당신의 행로를 매일 약간씩 변화시켜라. 집으로 향하는 길을 다양하게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기억하라: 대부분의 강간은 계획된다.</p>	 <p>외출시 형광등 하나를 켜두라. 모든 출입구에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라.</p>
 <p>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승강기에 타지마라. 만약 ‘걸려들었다’ 면, 모든 버튼을 누르고 다음 정지하는 곳에서 내려라. 승강기 안의 부름(관리실로 연결된) 버튼을 누르라.</p>	 <p>남자들이 숨을 만한 장소를 경계하라. 계단민, 출입구안 등등</p>	 <p>천천히 걸어라. 당신이 가는 행로를 아는 것처럼 보여라. 남자들이 모인 곳을 통과하지 마라.</p>
 <p>당신의 행로를 미리 계획하라. 어둡고 한적한 곳은 피하라. 출입구, 골목길, 어두운 주차장을 피해라.</p>	 <p>당신이 우울하고, 파괴하고, 술 취했다면, 혼자 걷지 마라.</p>	 <p>누가 따라오면 빨리 피하라. 방향을 바꿔라. 열린 영화관, 식당, 가게로 향해라.</p>
 <p>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소리 질러라. 계속 외쳐라</p>	 <p>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벨(초인종)을 누르기 보다는 불꺼진 집의 창문을 깨라.</p>	 <p>팔을 자유롭게(짐을 안들고 다니거나) 하거나, 짐을 버리고 빨리 준비를 하라.</p>
 <p>위협을 당할때 사용할 호루라기나 비자를 휴대하라.</p>	 <p>버스나 텔것을 기다린다면, 손을 자유롭게 하고(아무 것도 들지 않고), 균형을 맞춰 서 있어라.(똑바로) 누가 따라온다고 느껴지면 집으로 향하지 말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불러낸 뒤 같이 가라.</p>	 <p>낯선 사람이 승차하는 것을 용인하지 마라. 만약 운전수(기사)가 방향을 물으면, 차에 너무 기까이 다가가지 마라.</p>

## 어떻게 할까요.

# 만약 당신이 강간당했다면

1. 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몸을 셋지 말고 피해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산부인과 진찰의 목적은 첫째,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들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 고소를 할 경우 이 진단서는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몸에 멍이 들거나 다른 상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2. 전문 상담기관이나 여성단체에 도움을 청합니다.

3.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강간은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

피해사실은 숨겨지게 되고 가해자의 범행도 벌을 받지 않아 결국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고소를 할 경우 :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달리 적용되는 성 이중규범은 피해여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있는 고소는 가해자를 벌할 수 있고,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그냥 주저 앉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 고소방법 및 절차

1.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사고난 지역이나 가해자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냅니다.

3.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 조서와 가해자 조서, 대질심문 등이 있습니다. 진술시에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4.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5. 가해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시한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므로 필요시 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비공개재판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7. 1심에 불복하면 판결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8. 형사재판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 주소지의 법원이나 피해사고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이 발생 한 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용어를 알아봅시다.

###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항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구속/ 불구속 수사

피의자(가해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소 = 求공판 = 공소의 제기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사건발생 후 7년)

### 심리

판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재판의 전과정을 말합니다.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참고인 진술, 구형, 변론, 피고최후진술, 선고)

## 나눔터 알림판

### 보은·진관에게 사랑을

1. 서명운동에 참여합니다. 보은, 진관의 무죄석방과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모금활동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금은 자료집 발간, 서명운동, 촉구대회 개최 등 이들의 구명활동을 위해 쓰입니다.

국민은행 086-01-0262-161 보은진관  
조흥은행 348-01-090350 보은진관  
중소기업은행 216-01-0108-519 보은진관

3. 보은, 진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52-080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영등포 구치소 4116번 김보은  
430-180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458번지  
안양교도소 3392번 김진관

### 4. 항소심 공판에 참관합니다.

7월부터 항소심 공판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판에 함께 참여하여 지켜보는 것은 보은 진관에게 힘을 주고 재판부에 우리들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인식케 할 것입니다. 공대위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  
전화 : 525-5837 / 8

### 직장내성폭행 세미나 개최 예정

조사연구부(부장:안연선, 전연희)는 오는 8월 중에 직장내 성폭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부터는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내부 세미나형식을 취했던 이제까지의 방식을 벗어나 공개정기 세미나 형식을 갖기로 했다. 본 상담소는

개소 후 어린이성폭행, 데이트강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고, 그 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해왔다.

### 〈신규후원회원〉

강학중, 김기화, 김춘화, 김효겸, 김정선, 민재숙, 안석모, 유혜리, 윤상은, 지세민, 윤주로, 윤지혜, 이상근, 이종걸, 임성희, 임은순, 정혜진, 진행미, 채정희, 하성아, 호정애, 박신규.

### 〈기부금〉

- 일본 동경대 장화경
- CHIYUKI TADA
- 심혜근

### 〈나눔터회원〉

배춘화, 부산대총여, 구소연, 권종남

### 〈물품기증〉

안준영-전화기  
김미주-테이블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 02) 522 - 1040  
522 - 1041  
522 - 1042**

## 상담범위

강간을 비롯한 추행·성적희롱·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종류

상담은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만남인 면접상담과, 내담자모임으로 이루어진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 상담방법

여성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보기보다 사회환경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문제를 의논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서 내담자 역시 상담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전화상담 :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 오전 10시~오후 1시

면접상담 : 화·목, 오전 10시~오후 5시

집단상담 : 내담자모임이 이루어진 뒤에 시작

정신과 상담 : 화요일 오후 1시~5시(무료)

#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상담원 교육)을 마치면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 활동(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525 - 5838)

##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의 기본재정은 후원회비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에서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상담소의 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 가족으로서 모든 상담소 활동에 참여의 기회가 열립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직지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회비보내는 방법

보내고자 하는 돈을 일시불 또는 매월 분납하셔도 됩니다.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적어서 다음 은행 온라인구좌나 지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뒤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 009 - 01 - 1176 - 632 성폭력상담소

농협 : 037 - 01 - 194301 성폭력상담소

• 지로번호 : 7533156

조흥은행 : 308 - 01 - 133092 성폭력상담소

한일은행 : 015 - 040018 - 01 - 001 성폭력상담소

## 소식지 「나눔터」를 받아보려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1년 구독료 5천원을 시중은행지로  
(99) 창구에 납입하신 후 「성폭력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으  
로 발행되는 「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